

제 목 : 2023년 『공공예금계좌 관리실태』 감사결과

보통예금계좌의 자금 운영의 명확화, 위법성 사전차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『공공예금계좌 관리실태』 감사의 결과보고입니다.

I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23. 11. 10. ~ 11. 24. ▶ 2주간
- 감사대상 : 구 본청 및 동·의회·보건소의 **보통예금계좌 167개**
- 감사범위(내용) : 2022.11.1. ~ 2023.10.31.(보통예금계좌 운영·관리 현황 감사)
- 감사방법 : 서면
- 감사반 : 청렴감사팀장 포함 3명
- 중점 감사사항

- 입·출금 정상처리 여부(거래내역 및 잔액 확인 포함)
- 사적 목적으로 입·출금 여부
- 중간 수납금 및 일상경비 계좌 이자·포인트 발생에 따른 세입조치 여부
- 계좌 운영의 자체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

II 공공예금계좌 관리현황 및 감사결과

1 공공예금계좌 관리현황

(2023. 10. 31. 기준)

구분	계	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	총무국	복지교육국	주민생활지원국	안전도시국	의회 보건소	13개동
계좌수	167	4	37	27	12	23	5	59

2 감사 결과 : 처분현황

※신분상 처분 없음

구 분	행정상(건)		재정상	
	주의	건수	금액(원)	
현지처분	9	3	3,642,477	

III 총 평

- 2023년 구 공공예금계좌 감사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 시행(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, 2022. 4. 1.)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부서(동) 관리 계좌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구 공공예금 계좌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음.

- 2022년 및 2023년 회계부서(재무과)의 계좌 점검결과 및 구 금고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7개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사용 용도,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, 중대한 과실 및 공금 사적 이용 등 부패·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
- 재무과의 점검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통예금계좌 운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계좌 해지, SNS 알림서비스 등록, 계좌 비밀번호 정기 변경, 발생이자의 세입조치, 잔액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계좌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었으나
- 일부 부서(동)의 경우 지출 업무처리 절차에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미준수한 물품구입과 용역 계약을 하였고, 부서 구매카드 결제에 따른 발생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한 사례가 있었음.
- 따라서, 사업부서장(관서별 지출원)은 계좌 자체점검 시 형식적 점검을 벗어나 관리 계좌의 규모와 거래내역, 잔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투명한 계좌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, 계좌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.

IV

주요 지적사례

사례 1 구매카드 예금계좌 회계규칙, 집행기준 미준수

「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8조(지출의 절차)

- ② 부서장은 공사·제조·용역의 도급, 물건의 매입·수리·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(소모품의 매입·제조·운반, 소규모 용역 및 임차,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 원 미만에 한한다)은 예외로 한다.
-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7조의2(개좌의 개설·관리) ('22.4.1.시행)

▶ [별표2] <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>

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출

- 무인경비, 전기안전관리대행, 냉온수기 소독료,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,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(행사 용역은 제외)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○ (지적내용)

- ▶ 물품구매 계약 체결하여 물품구입지출결의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에도 구매카드로 구매하고 일반지출 결의
- ▶ 용역 계약 체결하여 계좌 이체하여 지출하여야 함과 행사용역은 소규모 용역에서 제외됨에도 구매카드로 일반지출 결의

○ (조치사항)

- ▶ 「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(동일사례 발생 시 분처분 및 신분조치 예정)

○ (해당부서) : 4개 부서(지소), 2개 동

사례 2 구매카드 발생 포인트 관리 소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4조(재정의 통합지출), 제120조(인센티브의 처리)
▶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, 마일리지, 적립금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함.

○ (지적내용)

- ▶ 구매카드 발생 캐시백, 포인트 연 1회 이상 세입 미조치

○ (조치사항)

- ▶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(동일사례 발생 시 분처분 및 신분조치 예정)
- ▶ 처리하지 않은 예금계좌의 발생 이자 및 포인트 등은 세입 조치

○ (해당부서) : 3개 동

V

검토 및 개선요구

교육 개선		재무과
현황 및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을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사례나 사례집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착오 처리를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음 	
개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,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직원들의 관련 법령 이해 및 정확한 업무 숙지 향상을 위한 사례집 제작 배부·교육 과정 안내 및 교육 이수 요구 	
기대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예금계좌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재무분야 내부통제 강화 	

공공예금계좌 관리(인수인계) 방법 개선		전부서(동, 사업소)
현황 및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서 및 팀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인사발령시 인수인계 누락 및 회계연도 내 세입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각종 세입금, 환급금 등이 처리되지 않고 계좌 잔액으로 장기간 남아있는 사례 발생 	
개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예금계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, 담당자 변경 시 작성하는 인수인계서에 관리하는 공공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, 회계연도내 세입조치 하여야 할 사항 등 기재하여 인수인계 	
기대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예금계좌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재무분야 내부통제 강화 	

- 붙임 1. 처분일람표
 2. 현지처분요구서. 끝.